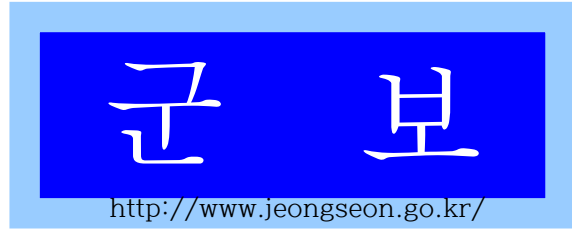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9호 2020. 3. 9. (월)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46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24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안)공람·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20-276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9
- 정선군 공고 제2020-282호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1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46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경제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임니다.

2020년 2월 2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고한 구공탄시장과 지장천 사이의 도로 현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고한 도시지역 내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 창출과 고한 구공탄시장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다.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라. 면 적 : 48,709㎡ (변경없음)

마.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경제과 및 도시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8,709	-	48,709	100.0	
일반상업지역	42,382	-	42,382	87.0	
자연녹지지역	6,327	-	6,327	13.0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⑨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 역	고한읍 고한리 62-14 대 일원	48,709	-	48,709	강고 제77호 (2002.4.8)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8	1,379	2	71	4	1,223	2	85
	변경	8	1,387	2	71	3	828	3	488
중로	기정	2	660	1	18	1	642	-	-
소로	기정	6	719	1	53	3	581	2	85
	변경	6	727	1	53	2	186	3	488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	20	국지 도로	61 (18)	중로 2-7 고한리 274-14대	중로 3-8 고한리 66-20대	일반 도로	엘리트 학원	강고83호 (02.4.15)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 선도로	1,953 (642)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294호 (73.7.12)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89 (53)	중로 2-7 고한리 62-9철	중로 3-8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37	소로 2-24 고한리 97-35대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 농협	강고2577호 (73.12.26)	
변경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39	소로 2-24 고한리 97-35대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 농협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97	소로 1-12 고한리62-218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300호 (03.12.13)	
변경	소로	3	40	7	국지 도로	407	소로 1-12 고한리62-218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47	중로 2-7 고한리 98-9철	소로 2-23 고한리 62-394대	일반 도로	고한 농협	정선고 제2010-96호 (2010.07.09.)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74 (31)	중로 2-7 고한리 97-4철	고한역 고한리 97-55철	일반 도로	-	정선고제29호 (2002.5.16)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54	소로 2-23 고한리 97-24대	소로 2-24 고한리 62-278도	일반 도로		강고2577호 (73.12.26)	
변경	소로	3	31	6	국지 도로	50	소로 2-23 고한리 97-24대	소로 2-24 고한리 62-278도	일반 도로		강고2577호 (73.12.26)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3	소로2-23	○연장 변경 - L=137m → 139m (증 2m)	○소로2-24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연장 변경
소로2-24	소로3-40	○폭원 및 연장 변경 - B=8m → 7m (감 1m) - L=397m → 407m (증 10m) ○도로 위계 변경 - 소로2류 → 소로3류	○지역주민 및 고한구공단시장 방문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기 개설된 도로현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고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등을 고려한 도로폭원 축소 ○도로 폭원 변경에 따른 도로 위계 변경
소로3-31	소로3-31	○연장 변경 - L=54m → 50m (감 4m)	○기 결정된 도로연장과 KLIS상 연장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연장오차 정정 및 소로2-24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연장 변경

※ KLIS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나. 주차장 : 변경없음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⑩	고한 역전 2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274-64도 일원	7,843	-	7,843	정선고 제29호 (02.5.16)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변경	E1	12,352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12,150	감)202	소로2-24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면적 변경 및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
변경	E2	1,061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795	감)266	소로2-24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면적 변경 및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
기정	E3	3,07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3,073	-	-
변경	E4	3,30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3,088	감)216	소로2-24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면적 변경 및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
기정	E5	1,480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1,480	-	-
기정	E6	7,843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7,843	-	-
기정	E7	770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770	-	-
기정	E8	890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890	-	-

※ KLIS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E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500% 허용 : 500%~600%	
			높 이	◦ 8층(28m)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E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E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E4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E5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6층(21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E6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	
			건 폐 율	◦ 해당사항 없음	
			용 적 륜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E7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 폐 율	◦ 해당사항 없음	
			용 적 륜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E8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 폐 율	◦ 해당사항 없음	
			용 적 륜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E8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24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도시지역(정선, 여량, 북평, 임계) 일원
3. 규 모 : 변경 - 109개소 (도로 108개소, 공원 1개소)
폐지 - 23개소 (도로 19개소, 공원 4개소)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여량면사무소, 북평면사무소
임계면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0. 3. 04. ~ 2020. 3. 19.)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랑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0. .
공 랑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랑 의 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1학기 2학기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0-276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 발생 및 설·추석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정선아리랑 상품권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 나.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정선아리랑 상품권 구매시 포인트 적립률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코로나19 발생 및 설·추석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 일정기간동안 정선아리랑 상품권 구매포인트 적립율을 상향조정(안 제6조 제1항)
 - 포인트 적립률 : 5% ⇨ 10%
- 나. 그 밖에 상품권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 전화 : 033-560-2240
- 팩스 : 033-560-259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입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상품권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282호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지정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위원회 설치(안 제2조)

나.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안 제3조)

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허용(안 제4조)

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안 제7조)

마. 지정 여부 심사는 심사기준에 의하되, 위원들의 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지정(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3. 5. ~ 2020. 3. 25.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복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023),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2020-282호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청(이하 “정선군”라 한다)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정선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4.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③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관련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사·의결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 심사·의결된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채점
합 계		100	0
설치 운영자 및 장기 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공통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91일~179일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20 (정량)	
	☐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 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공통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20 (정량)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설치 운영자 및 장기 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5점)	□ 공익성 및 전문성 등			
	재 지 정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5	
		▷ 수립 (우수:5점 보통:4점 미흡:3점)----- 3~5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1급 취득후 (5년이상:10점 3년이상:5점 3년이하~경력x3점) 2급 취득후 (5년이상:5점 3년이상:4점 3년이하~경력x3점)	10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 3~10점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 3~5점		
	신 규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5	
		▷ 수립 (우수:5점 보통:4점 미흡:3점)----- 3~5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1급 취득후 (5년이상:10점 3년이상:5점 3년이하~경력x3점) 2급 취득후 (5년이상:5점 3년이상:4점 3년이하~경력x3점)	10	
		▷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 3~10점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 3~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 운영규정, 사업계획,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	
	공통	▷ 마련 (우수:5점 보통:4점 미흡:3점)----- 3~5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에 관련된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5	
	공통	▷ 수립 (우수:5점 보통:4점 미흡:3점)----- 3~5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수립 여부		5	
	공통	▷ 수립 (우수:5점 보통:4점 미흡:3점)----- 3~5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 운영위원회			
	재 지 정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활용 등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	
		▷ 마련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신규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여부	3	
		▷ 마련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 예산 및 재무회계			
	재 지 정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3	
		▷ 수립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신규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3	
		▷ 수립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 자원연계사항			
	공통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3	
		▷ 수립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공통	♣지역 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3	
		▷ 마련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 재무건전성			
	재 지 정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3	
		▷ 가능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가능하지 않음 ----- 0점		
	신규	♣사업비 조성에 따른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건전 여부	3	
		▷ 건전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건전하지 않음 ----- 0점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근로계약			
	공통 (생활 시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	
		▷ 체결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체결하지 않음 ----- 0점		
	공통 (이용 시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	
		▷ 체결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체결하지 않음 ----- 0점		
	□ 보험가입			
	공통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	
		▷ 수립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1	
		▷ 마련 ----- 1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 인력채용			
	재 지 정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공개모집 여부 등)	3	
		▷ 채용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2회 공개채용 위반 : 2점, 3회이상 공개채용 위반 : 1점 ▷ 채용하지 않음 ----- 0점		
	신규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3	
		▷ 수립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1~3점		
		▷ 수립하지 않음 ----- 0점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직원 후생 복지 (5점)	□ 종사자 처우개선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 ▷ 마련 ----- 1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1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 마련 ----- 1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1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 마련 (우수:2점 보통:1점) ----- 2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2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마련 ----- 1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1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 ▷ 마련 (우수:2점 보통:1점) ----- 2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2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 마련 ----- 1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1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 마련 (우수:2점 보통:1점) ----- 2점 ▷ 마련하지 않음 ----- 0점	2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재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정선군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참 고**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중 략)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생 략)

관련 부칙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중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 부칙

제4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